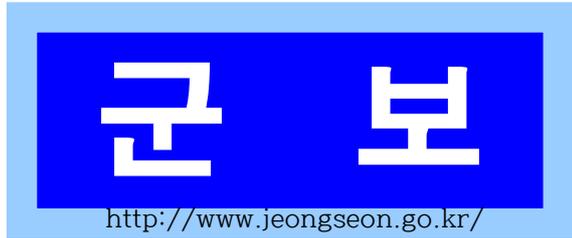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63호 2012. 3. 21. (수)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173호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 복지재단 2011년 결산 공고..... 1
- 정선군공고 제2012-182호 2012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계획 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2-191호 신조공인 공고..... 13
- 정선군공고 제2012-201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라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6
- 정선군공고 제2012-202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25
- 정선군공고 제2012-203호 2012년도 정선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안... 26
- 정선군공고 제2012-207호 정선군 무인단속장비(과속/다기능) 이설 행정예고..... 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173호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 복지재단 2011년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2011년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9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3. 9. ~ 3. 28. (20일간)

2. 장 소 : 군청 게시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2011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결산내역서

4. 기타사항

가.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560-2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결산 개요

세 입 세 출 결 산 서

1.세입총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예산잔액
관	항	목	(A)	(B)	(A)-(B)
합계			7,065,298,040	7,063,264,882	2,033,158
재산수입	기본재산 수입	소 계	950,000,000	956,277,136	- 6,277,136
		이자수입	950,000,000	956,277,136	- 6,277,136
보조금 수입	후원금	소 계	5,010,739,200	5,010,739,200	-
		일반후원금	5,000,000,000	5,000,000,000	-
		지정후원금	10,739,200	10,739,200	-
이월금	이월금	소 계	708,293,674	708,293,674	-
		전기이월금	741,117,774	741,117,774	-
		전기미지급금 의 지급(△)	29,783,010	29,783,010	-
		전기에수금의 지급(△)	3,041,090	3,041,090	-
상환금	상환금	소 계	8,400,000	8,162,815	237,185
		주거안정자금 상환금	8,400,000	8,162,815	237,185
잡수입	잡수입	소 계	387,865,166	379,792,057	8,073,109
		법인세환급금	178,482,840	176,808,010	1,674,830
		기타예금이자 수입	75,000,000	69,153,962	5,846,038
		기타잡수입	134,382,326	133,830,085	552,241

세입세출결산서

2. 세출총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예산잔액	
관	항	목	(A)	(B)	(A)-(B)	
총 계			7,065,298,040	6,290,063,362	775,234,678	
사무비	인건비	소 계	465,202,000	458,277,490	6,924,510	
		급 여	309,336,000	307,677,440	1,658,560	
		특별상여금	66,000,000	66,289,000	- 289,00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33,000,000	32,755,800	244,200	
		사회보험분담금	35,754,000	34,978,920	775,080	
		기타후생경비	21,112,000	16,576,330	4,535,670	
	업무추진비	소 계	14,400,000	10,923,120	3,476,880	
		기관운영비	8,400,000	8,316,940	83,060	
		직책보조비	6,000,000	2,606,180	3,393,820	
	회의비	소 계	54,700,000	54,643,925	56,075	
		회의비	54,700,000	54,643,925	56,075	
	운영비	소 계	72,280,000	43,021,890	29,258,110	
		여 비	16,260,000	4,506,200	11,753,800	
		교육훈련비	11,700,000	4,414,700	7,285,300	
		수용비및수수료	37,120,000	28,528,280	8,591,720	
		공공요금	7,200,000	5,572,710	1,627,290	
	재산조성비	시설비	소 계	84,000,000	76,005,440	7,994,560
			차량유지비	36,600,000	31,582,460	5,017,540
주거안정대여금			40,000,000	40,000,000	-	
자산취득비			5,000,000	2,055,000	2,945,000	
시설장비유지비			2,400,000	2,367,980	32,020	
사업비	소 계		6,210,739,200	5,637,969,497	572,769,703	
	진폐지원사업	소 계	1,900,000,000	1,756,766,200	143,233,800	
		재가진폐지원사업	1,050,000,000	984,076,040	65,923,960	
		폐광지역진폐사업	200,000,000	125,000,000	75,000,000	
		타폐광지역진폐사	650,000,000	647,690,160	2,309,840	

		업			
이동복지 사업	소 계	소 계	1,450,000,000	1,355,104,962	94,895,038
		방문복지사업	870,000,000	846,322,610	23,677,390
		이동진료사업	580,000,000	508,782,352	71,217,648
소외계층 지원사업	소 계	소 계	1,935,000,000	1,658,502,118	276,497,882
		희망의집수리사업	600,000,000	433,188,540	166,811,460
		행복일자리사업	475,000,000	420,633,358	54,366,642
		지역복지특화사업	800,000,000	764,870,750	35,129,250
복지역량 강화사업	소 계	장애인행복만들기 사업	60,000,000	39,809,470	20,190,530
		소 계	820,000,000	777,060,317	42,939,683
		사회복지시설지원 사업	650,000,000	626,206,153	23,793,847
		사회복지인교육지 원사업	170,000,000	150,854,164	19,145,836
홍보연구 사업	소 계	소 계	105,739,200	90,535,900	15,203,300
		홍보사업	45,000,000	44,452,000	548,000
		후원결연사업	10,739,200	10,739,200	-
		정책개발연구사업	50,000,000	35,344,700	14,655,300
잡지출	잡지출	소 계	18,000,000	9,222,000	8,778,000
		잡 지 출	18,000,000	9,222,000	8,778,000
예비비	예비비	소 계	145,976,840	-	145,976,840
		예 비 비	145,976,840		145,976,840

정선군 공고 제2012 - 182호

2012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계획 공고

정선군에서는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단체관광객 숙박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 3. 13.

정 선 군 수

1 운영개요

가. 운영기간 : 2012. 3. 15.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다. 지원기준

○ 내국인 : 숙박 관광객 버스 1대당(30인 이상) 20만원

○ 외국인 : 숙박 관광객 버스 1대당(20인 이상) 20만원

* 국내관광객 + 외국인(재외동포)관광객 포함 30명이상일 경우

내국인 기준 인센티브 지급

○ 수학여행단 : 내국인 숙박 관광객 지원기준의 50% 지급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2 지원조건 및 금액

가. 지원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정선군의 유료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 계획을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사전 통보한 여행사

○ 내국인 단체관광객·수학여행단 1회 30인 이상 유치 또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1회 20인 이상 유치

○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상 호텔이나 콘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수련원,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숙박관광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기사, 안내원 등)

➢ 강원도 또는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

➢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축제, 팸투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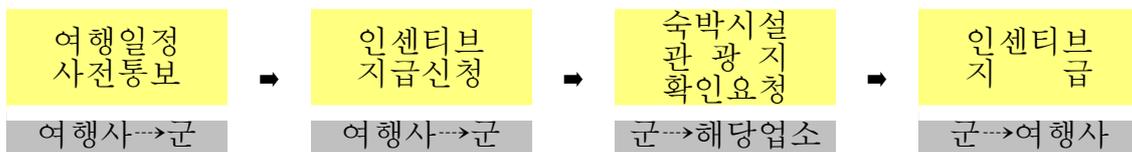
- 관내 숙박관광일정을 정선군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완전 배제)

나. 지원금액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비 고
내국인단체관광	버스1대(30인 이상)	1박당 200,000	유료관광지 방문
수학여행단		1박당 100,000	
외국인단체관광	버스1대(20인 이상)	1박당 200,000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가. 처리절차



나. 신청접수

- 접수시기 : 관광시행 1주일 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우 233-830)
 - FAX 033-560-2593
- 신청서류 : 단체관광계획 사전 통보서 **【서식 1】**
- 접 수 처 : 정선군 관광문화과 관광마케팅팀 (☎ 033-560-2362)

다. 지급신청

- 신청기간 : 관광종료 후 30일 이내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여행사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2】**

4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우리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라. 인센티브 지급에 논란이 있을 경우 정선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서 식 1 】

단체관광계획 사전 통보서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등 록 번 호	
연 락 처	TEL)	FAX)	

관광계획

관 광 구 분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단체 <input type="checkbox"/> 수학여행
기 간	2012. . . ~ 2012. . . (박 일)
단 체 명	※ 수학여행인 경우 학교명
인 원	명 (내국인 : 명, 외국인 : 명)
여 행 일 정	별첨 참조
숙 박 업 소	
인 술 자	(연락처 :)

위와 같이 정선군 관광을 실시하고자 계획서를 통보합니다.

-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안)
2. 관광사업등록증

2012년 월 일

○○○여행사 (인)

정선군수 귀하

여 행 일 정 표 (예시)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분)			
첫 째 날	08:00	12:00	4H	○ 서울 → 정선 도착	
	12:00	13:00	60	○ 중식	
	13:00	15:00	120	○ 정선5일장, 아라리촌	
	15:00	15:30	30	○ 정선→화암면이동	
	15:30	17:30	120	○ 화암동굴, 화암약수	
	17:30	18:00	30	○ 화암면→사북읍 이동	
	18:00	19:00	60	○ 석식	
	19:00			○ 숙박 및 자유시간	
둘 째 날	07:00	08:00	60	○ 기상	
	08:00	09:00	60	○ 조식	
	09:00	10:00	60	○ 사북읍 → 여량면 구절리역 이동	
	10:00	11:00	60	○ 오장폭포, 여치카페	
	11:00	12:00	60	○ 레일바이크	
	12:00	13:00	60	○ 중식	
	13:00			○ 서울출발	

단체관광객 명단

연번	주 소(단체명, 학교명)	성 명	국 적	성 별	연 령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유료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

관광지 현황

관광지명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TEL)	FAX)	

관광지 방문(이용) 내역

방문일자	여행사명	대표자	방문인원			결제금액(원)	비고
			합계	관광객	여행사		

위와 같이 숙박 여행사 및 숙박 실적을 확인하며, 동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관광지 이용료 지급 증빙서(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2012년 월 일

확인자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공고 제 2012 -191호

신조공인 공고

정선군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정 선 군 수

1. 사 용 일

- 가.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6번) : 2012.3.23.
- 나. 정선군수인 정선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1번) : 2012.3.23.
- 다. 정선군수인 정선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2번) : 2012.3.23.
- 라. 정선읍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1번) : 2012.3.23.
- 마. 정선군수인 고한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1번) : 2012.3.23.
- 바. 정선군수인 고한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2번) : 2012.3.23.
- 사. 고한읍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1번) : 2012.3.23.
- 아. 정선군수인 사북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1번) : 2012.3.23.
- 자. 정선군수인 사북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2번) : 2012.3.23.
- 차. 사북읍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1번) : 2012.3.23.
- 카. 정선군수인 신동읍장전용(통합발급기용) : 2012.3.23.
- 타. 정선군수인 화암면장전용(통합발급기용) : 2012.3.23.
- 파. 정선군수인 남면장전용(통합발급기용) : 2012.3.23.
- 하. 정선군수인 여량면장전용(통합발급기용) : 2012.3.23.
- 가. 정선군수인 북평면장전용(통합발급기용) : 2012.3.23.
- 냐. 정선군수인 임계면장전용(통합발급기용) : 2012.3.23.

3. 신조 이유 :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증명발급에 필요한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직인을 등록하고자 함

4. 신조공인 인영

신조공인 인영

신조공인명	인 영	신조공인명	인 영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 6)		정선군수인 (정선읍장전용 1)	
정선군수인 (정선읍장전용 2)		정선읍장인 (민원실전용 1)	
정선군수인 (고한읍장전용 1)		정선군수인 (고한읍장전용 2)	
고한읍장인 (민원실전용 1)		정선군수 (사북읍장전용 1)	

신조공인 인영

신조공인명	인 영	신조공인명	인 영
정선군수 (사북읍장전용 2)		사북읍장인 (민원실전용 1)	
정선군수인 (신동읍장전용)		정선군수인 (화암면장전용)	
정선군수인 (남면장전용)		정선군수인 (여량면장전용)	
정선군수인 (북평면장전용)		정선군수 (임계면장전용)	

정선군 공고 제2012-201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정선군 신동읍 산17번지 일원에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056
 - 문의전화 : 033-560-2330

붙임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선군이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권 서식은 별표 2에 따른다.

-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표3 서식에 의한 예약 및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다만,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및 각종 상행위
4.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5조 및 제7조 각 항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자연휴양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시설사용료 등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야영데크(4×4m)			야영장비			비고
	성수기 (7~8월)	비수기		텐트 (4~5인용) 침구2조포함	코펠	버너	
		주중	주말				
야영장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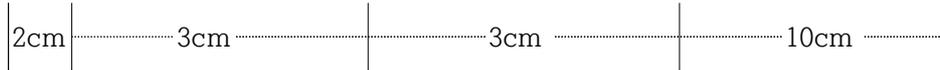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에서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주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 토, 일, 공휴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 2]

시설 사용권 (제3조제1항 관련)

(앞면)

편 철 부 분	<u>○○○사용권 원부</u>	<u>○○○사용권</u>	대 표 적 사 진	7cm
	No. ○○○○자연휴양림 원 () 정 선 군 수	No. ○○○○자연휴양림 원 () 정 선 군 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00시~다음날00시)		



(뒷면)

<u>시 설 배 치 도</u>	<u>알리는 말씀</u>	편 철 부 분	7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질서를 지킵시다. - 쓰레기를 줄입니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 자연을 보호합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p>☞ 자연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온것! ☜</p>		



※ ()안에는 시설사용료의 구분내용 (야영장 번호)

[별표 4]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환 불 기 준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일 3일전 예약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전 예약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 사용일 1일전 예약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전 예약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중에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반환

정선군공고 제2012-202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정 선 군 수 [인]

1. 열람기간

2012년 3월 28일부터 } 3일간(공휴일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정상
2012년 3월 30일까지 } 근무일의 근무시간중)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정선읍사무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31(봉양리 210-1)	
고한읍사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고한리 125-4)	
사북읍사무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사북리 317-26)	
신동읍사무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예미리 759)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화암리 393-1)	
남 면사무소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문곡리 103-1)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여량리 305-3)	
북평면사무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북평리 222-2)	
임계면사무소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송계리 773-1)	

4.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eongseon.go.kr>

5. 인터넷 열람방법

정선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창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클릭 하시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2-203호

2012년도 정선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안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12년도 경관주택건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3 월 20 일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 관내 도시지역외(녹지지역 제외)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의 단독주택 중 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용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 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 라. 주민이 자력으로 신축하는 주거전용면적 150㎡ 미만의 주택

※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이중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함.
2. 지원금액 : 동당 5,000천원 범위내 보조
3. 지원신청
 - 가. 신청시기 : 2012. 4. 6일 까지
 - 나.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다.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신청기관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경관주택 인증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
건축위치			용도지역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규모	대지면적	m ²	총사업비	천원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m ²	용적율	%
	건축구조		층수	
	마감재	벽체 :		지붕 :

강원도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주택 인증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설계도 규격 A4(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건축현황 사진 및 원본파일(원경, 근경, 전,우,좌,후 이면사진, CD또는 USB)
3. 전시판넬 규격 A3.

<서식 2>

건축현황 사진

원
경

근
경

※ 원경, 근경, 전면, 좌측, 우측, 후면, 기타조경 및 시설물특징적인 사진 등

<서식 3>

설계 설명서

○ 위 치 :

○ 건 축 주 :

설계설명 요약 서술
(설계의도 및 컨셉 등)

정선군 공고 제2012 -207호

정선군 무인단속장비(과속/다기능) 이설 행정예고

정선군 국도 38호선 신동읍 마차재정상 ~ 유문동 4거리 구간 5.5km와 마차재 정상 ~ 남면 문곡 IC구간 5.6km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동 구간내 설치되어있던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과속/다기능)를 이설함에 있어 그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12. 3. 20.

정 선 군 수

1. 취 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선군 국도 38호선 마차재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동 구간에 설치되어있던 불필요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과속/다기능)를 이설설치 하고자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3. 20 ~ 2012. 4. 9(20일간)

5. 설치장소

연번	기존설치장소	이전설치장소	단속기능	차로수 (편도)	제한속도 (Km/h)	비고
1	정선군 남면 문곡리 404 (남면-고한방면)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474-9 (남면-영월방면)	과속	2	60	
2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658-27 (신동-영월방면)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4-9 (신동-고한방면)	다기능	2	80	

6. 의견제출

○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4.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1)를 정선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설 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560-2596)

라. 보내실 곳 : 우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36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정선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설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3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